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1월 28일, 유용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의원)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현행 방산물자 대여제도는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 및 대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방산물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방산물자 대여에 따른 군의 전력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가 신속하게 수출 홍보·전시와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는 무기체계의 무단 반출 등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승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인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산업체에서 자체 생산·보유한 방산물자의 보유 목적이 소멸되거나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방산물자 폐기 등 처분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하위법령 등에 마련하여 방산물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방산업체 자체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경우 현행 무상 대여 방식보다 방산업체에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방산수출 지원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형사처벌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 제62조제5항제8호는 엄격한 방산물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형벌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방산물자의 무단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 승인의 요건과 절차, 관리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6.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는 무기체계의 무단 반출 등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산물자 생산·보유의 목적을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로 한정하고, 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제3항 중 “수출”을 “수출의”로, “국방연구개발 등을” “국방연구개발을”로, “보유”를 “보유·폐기”로, “받아 할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에”를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로 한다.

안 제62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폐기한 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 발 등을 목적으로 자 신의 부담으로 방산물 자를 생산하거나 개조 · 개발하여 이를 보유 하고자 하는 경우 방 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승인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산업체가 수출 의 홍보 또는 국방연 구개발을 목적으로 자 신의 부담으로 방산물 자를 생산하거나 개조 · 개발하여 이를 보유 · 폐기하고자 하는 경 우 방위사업청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 른 승인의 요건과 절 차, 보유 중인 방산물 자의 관리 및 폐기 절 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6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⑥ (생략)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4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방산물 자를 생산하거나 개 조·개발하여 보유 · 폐기한 자 ⑥ (현행과 같음)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이를 보유·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폐기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이를 보유·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 설></u>	제6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u>

⑥ (생 략)	<u>하여 보유 · 폐기한 자</u> ⑥ (현행과 같음)
---------	------------------------------------